

문화·예술·스포츠 융합 연구소 규정

제정 2018. 11. 1.

제 1 장 총 칙

- 제 1 조 (명칭) 본 연구소는 호서대학교 부설 문화·예술·스포츠 융합 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라 한다)라 한다.
- 제 2 조 (목적) 본 연구소는 문화·예술·스포츠 융합 분야의 제문제를 연구하며, 관련 사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 3 조 (위치) 본 연구소는 호서대학교 내에 둔다.
- 제 4 조 (사업내용) 본 연구소는 문화·예술·스포츠 융합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 - ① 문화·예술·스포츠 융합 분야에 관련된 기초연구사업 및 학술연구활동
 - ② 정부, 산업체, 기타 외부기관에서 위촉하는 연구 과제 수행
 - ③ 공연, 전시, 발표 등 문화예술·스포츠 융합 관련된 세미나, 강연회 및 강습회 개최
 - ④ 학술지 및 기타 간행물 발간
 - ⑤ 문화·예술·스포츠 융합 분야의 고급 전문인력 양성 사업
 - ⑥ 기타 본 연구소의 설치목적에 수반되는 사업

제 2 장 조 직

- 제 5 조 (조직) 본 연구소에 스포츠과학 위원회, 디자인 위원회, 문화예술 위원회, 산학연컨소시엄 위원회를 둔다.
 - ① 스포츠과학 위원회는 생활체육 및 엘리트체육 분야의 과제를 담당한다.
 - ② 디자인 위원회는 시각 및 산업 관련 분야의 과제를 담당한다.
 - ③ 문화예술 위원회는 연극, 음악, 영상, 문화 콘텐츠 및 문화 기획 분야의 과제를 담당한다.
 - ④ 산학연컨소시엄 위원회는 연구소의 산학연간 공동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통합지원 역할을 담당한다.
- 제 6 조 (구성) 본 연구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 - ① 소장 1명
 - ② 감사 1명
 - ③ 운영위원 8명 내외
- 제 7 조 (소장) ① 소장은 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있다.
 - ② 연구소를 대표하며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제반업무 전체를 관장한다.
- 제 8 조 (감사) ① 감사는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 - ② 감사는 매년 2월말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특정한 목적에 따라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.
 - ③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.
 - 1. 연구소의 당해 연도 예·결산
 - 2. 연구소 당해 연도 사업의 타당성

3. 기타 운영위원회 의결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

제 9 조 (운영위원회)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이 겸임한다. 소장 부재 시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.

② 운영위원은 연구소 소속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장이 임명하고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 3 장 운영위원회

제 10 조 (회의) 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발의로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.

③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.

1. 주요 사업계획 및 운영방법
2. 예산 및 결산
3. 규정 개정 발의
4.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

④ 운영위원회는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한 운영위원의 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.

제 4 장 재 정

제 11 조 (재정)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충당한다.

1. 교외수탁연구비 및 수탁연구비의 간접경비
2. 산업체의 연구개발 출연금
3. 각종 교내외 연구비와 기타 수입 누적금
4. 기부금 및 기타 보조금

제 12 조 (회계연도)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대학회계연도에 준한다.

제 5 장 폐 소

제 13 조 (폐소) 본 연구소가 폐소할 때에는 잔여 재산을 본교에 귀속시킨다.

제 6 장 보 고

제 14 조 (보고) 연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이때 보고는 연구소 관리 부서에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.

- ① 연구소 운영실적보고서 - 다음해 3월말까지(해당 학년도 연구비 수혜상황 및 연구실적 총괄표 포함)
- ② 매 회계연도 결산서 - 다음해 3월말까지
- ③ 신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- 1월 말까지
- ④ 기타 연구소와 관련된 자료

제 7 장 보 칙

제 15 조 (준용) 연구소의 운용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대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
제 16 조 (운영세칙)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